

CASES

조정중재사례 소개

| 명예훼손 사례 | 범죄 피의자에 대해 보도하더라도 익명처리를 했어야

A언론사는 보안구역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대형 마트에서 소액 상품을 훔친 절도범들을 협박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도록 보안요원들을 부추겼다는 경찰의 발표를 인용 보도했다. 신청인 회사는 보도내용과 같이 보안요원들을 부추긴 사실이 없고, 경비업법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신청을 했다. 해당 중재부는 범죄 피의자에 대해 보도하더라도 익명처리를 했어야 하고, 경찰 조사결과 경비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일부 정정보도가 필요하다고 피신청인을 설득해 합의를 도출해 냈다.

| 음성권 침해 사례 | 동의없이 신청인의 음성을 공개한 것은 음성권 침해

B언론사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원액기의 문제점에 대해 보도하면서 쇼호스트의 초상 및 음성을 보도했다. 신청인은 해당 언론사가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자이크 처리를 완벽하게 하지 않아 초상권이 침해되었고, 음성이 그대로 방영되었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해당 중재부는 신청인의 직업이 쇼호스트인 점을 감안, 신청인의 초상이 모자이크 처리가 일부 되었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음성만으로도 시청자들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이므로 동의없이 신청인의 음성을 공개한 것은 음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중재부의 권고를 수용하여 당사자들은 100만원의 손해배상으로 합의했다.

독자마당

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  사람」을 읽고 나서 느낀 점 등을 성명, 연락처와 함께 이메일(pac_news@pac.or.kr)로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김선미 _ 새해부터 전직 야구선수의 죽음으로 세간이 떠들썩했지요. 그 후로 며칠동안 미디어에서 그의 죽음에 대해 다루는 기사를 내보내는 것을 보면서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 안타까움이나 숙연함보다는 그저 자극적인 영상과 언급들이 더 많아 아쉬움이 컸습니다. 이런 유명인의 자살에 대한 보도가 불특정다수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좀 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고 계속해서 높아지는 자살률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하지 않나 싶었는데 마침 본지에 '자살에 관한 전통철학적 접근'이라는 기사가 실려 매우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기사를 읽고 자살을 단순히 정학적, 정신분석학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보다 다각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려는 시도가 꾸준히 이어져야 하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자살에 대한 언론의 보도행태가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현석 _ 정직한 국민이 되도록 애쓰자는 권성 언론중재위 위원장님의 신년사와 함께 시작한 이번 호에서는, 2012년 언론중재위원회의 사회문제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다양한 활동을 사진으로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김동연 제2차관의 인터뷰를 통해 2013년도 정부의 재정정책의 기초와 앞으로의 방향을 알 수 있었고,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 제게 다시 한 번 꿈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는 자살에 대한 동, 서양의 철학적 접근이 이루어진 정책심포지엄은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내면을 깊숙이 성찰할 필요성을 일깨워준과 동시에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제도적 장치 마련의 시급성을 모두가 공감한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심포지엄에 함께 하지 못한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이번 호도 알차게 읽을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고 다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언론중재위가 우리사회의 공정성을 도모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내용도 좀 더 풍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국민들 모두가 바라는 공정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길에 언론중재위의 계속된 노력과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전창희 _ 「기사형 광고' 기사인가 광고인가」를 잘 보았습니다. 평소엔 신문을 보다보면 기사형 광고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럴때마다 언론사에서 취재해서 쓴 것 같은 착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광고를 기사로 잘못 알고 물건을 구입할 수도 있을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였는데, 최근 법원에서 기사형 광고를 낸 언론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니 정말 올바른 판결을 내린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언론이 이 사회에서 맡은 책임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기사형 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해야할 것이고 부디 항소심에서도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